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UCP 600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 석 재**

-
- I. 서 론
 - II. 중국의 법·규정과의 충돌 문제
 - III. 신용장의 운용 관련 문제
 - IV. 사법기관 관련 문제
 - V. 결 론
-

주제어 : UCP 600, 신용장, 중국, 무역거래

I. 서 론

우리나라는 1992년 중국과 수교를 체결한 이후 중국과의 무역량이 급증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5,596억 달러 중 대 중국 수출액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B00385).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교수

은 1,458억 달러를 기록하여 26%, 전체 수입액 5,156억 달러 중 대 중국 수입액은 830억 달러를 기록하여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제1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으며 중국과의 무역의 중요성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중국과의 무역 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제 관련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로 신용장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신용장 거래에 관해서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종사하는 중국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화환 신용장에 관하여 신용장통일규칙에 준거하고 있다.¹⁾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시기에 중국 은행들은 자기 방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UCP 규칙이 종종 간과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당한 지급거절, 지급지연 등과 같은 나쁜 은행 관행들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종종 발생하곤 한다.²⁾ 중국에서의 신용장 분쟁은 매입, 인수, 사기의 입증, 가치분 구제제도와 같은 신용장 사기에 대한 사법의 구제수단, 통지은행 및 양도은행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룬다.³⁾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UCP에 준거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UCP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또한 오랫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젖어 있다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한 나머지 아직 세계적인 게임의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이에 본고는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UCP 600 적용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남풍우 교수의 연구(1998년)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UCP 500을 중심으로 대 중국 상품거래에서 무역결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 중국 신용장 결제상의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1) D. A. Laprès & J. Mo, "L/Cs, collections, guarantees and other instruments in the PRC", *DCINSIGHT*, Vol.13, No.4, ICC, 2007. 10/12, p. 21.

2) W. Shanlun, "How L/Cs are faring in the economic turmoil: a view from four countries", *DCInsight*, Vol.15, No.2, ICC, 2009. 4/6, p. 6.

3) J. Saibo, "Review on the Cases of Letter of Credit in China, 2008 to 2010", *2012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12, p. 77.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현행의 신용장 통일 규칙인 UCP 600이 아닌 구 규칙인 UCP 500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주로 일본의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감이 있다. 이에 본고는 위의 연구와는 달리 중국의 최신 문헌들을 활용하여 UCP 600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무역업계 및 은행업계의 관계자들이 중국과의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참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서 탐방조사,⁴⁾ 이메일을 통한 자문⁵⁾ 및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신용장 전문가들에게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UCP 600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하여 받은 답변으로는 중국 국내의 법·규정과의 충돌 문제, 업계의 신용장 실무 지식 부족, 지정은행의 소극적 역할, 지급 금지명령의 남용, 법원 판결의 일관성 결여 등이다. 이에 본고는 위의 지적들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UCP 600 적용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중국의 법·규정과의 충돌 문제

1. 중국의 어음법과의 충돌

중국의 어음법은 단지 환어음에 대하여 총칙성의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화환신용장 하의 환어음이라는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어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무 상 이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⁶⁾

4) 필자는 2012년 7월 10일 및 2013년 7월 7일 전 세계적인 신용장 전문 연구기관인 IIBLP의 북경 Annual Survey에 참여하여 James E. Byrne(미국 조지메이슨 대학 법대) 교수 및 중국 은행 전문가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자문을 받았다.

5) 필자가 접촉한 은행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은행 전문가인 Joe Yap, 체코 변호사인 Marek Dubovec,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담당자인 Burger-Scheidling Maximillian, 독일 은행 전문가인 Nicole Keller, 홍콩 변호사인 Fung King Tak, 네덜란드 은행 전문가인 Simon J. Vorst, 미국 은행 전문가인 Dennis Noah, 이스라엘 변호사인 Ariel Mirelman, 미국 법대 교수인 James E. Byrne, 중국 은행 전문가인 Shiela, 미국 은행 전문가인 Charter H. Klein, 미국 은행 전문가인 Vincent Maulella, 미국 변호사인 Robert Rosenblith, 미국 은행 전문가인 James Barnes, 홍콩 은행 전문가인 Ray Lee 등이다.

6) 藍翠玉·刘琳琳, “跟单信用证汇票适用我国〈票据法〉的疑难问题及对策”, 山东大学学报

1) 환어음의 要式性

환어음은 요식증권으로서 어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만 화환신용장 하의 서류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화환신용장 하의 환어음에 대한 요식성 요구가 약화되며, 단지 환어음이 기본적 요소를 구비하도록 한다. 또한 신용장 및 기타 서류와 서로 일치하면, 엄격하게 중국의 어음법 규칙을 적용하여 환어음의 유효성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중국의 어음법 제22조는 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의 필수 기재사항이며, 필수 기재사항을 미기재한 환어음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상업회의소 중국국가위원회는 환어음은 신용장 하의 서류이며, 동 ‘서류’는 ‘화물’에 상대적 개념으로서 상업서류 및 금융서류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화환신용장 환어음을 신용장 하의 서류로서 간주하는 방법은 중국의 어음법 규정과 서로 모순되며, 화환신용장 실무 중 대량의 은행 서류심사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⁷⁾

또한 일반적으로 신용장 중 모든 환어음이 반드시 발행일과 발행지 등의 규정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발행일과 발행지가 없는 환어음은 틀림없이 불합격한 것이고, UCP 600 중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일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중국의 어음법 제22조에 근거하면, 발행일과 발행지가 없는 환어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⁸⁾

또한 중국 ‘어음법’ 제8조에 근거하면 “어음금액은 중문 대문자와 숫자로 동시에 기재하여야 하며, 양자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양자가 불일치할 때 어음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⁹⁾ 이는 우리나라 어음법 제6조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와 숫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는 규정과 상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환어음 금액의 문자와 숫자가 다르더라도 환어음의 효력에 영향이

哲学社会科学版, 2012年 第2期, p. 116.

7) 蓝翠玉·刘琳琳, 전제논문, p. 117.

8) 江波, “浅析信用证下汇票缮制的几个问题”, 商场现代化, 2008. 12, p. 19.

9) 裘小薇, “UCP600与我国信用证审单标准的若干法律问题研究”, 广西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2009. 9, p. 70.

없는 반면, 중국은 어음법 제8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환어음은 무효가 된다는 점에 실무상 유의하여야 한다.

2) 환어음의 무조건 지급 성질 및 지급기한

UCP 600은 여전히 신용장 하 환어음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각국의 어음법은 기본적으로 환어음은 조건부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환어음이 어음법의 要式性 요구를 부합하는 경우에 그 대금지급이 강제성을 가진다. 그러나 실무상 신용장은 일종의 조건부 지급이며, 주요한 것은 서류가 신용장의 요구에 부합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으며, 그 대금지급은 매우 많은 불확정성을 가진다. 따라서 중국의 어음법과 신용장 실무에서 활용되는 환어음 사이에는 분명히 모순이 존재한다.¹⁰⁾

상술하면 중국의 어음법에 따르면 환어음은 지급조건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되며, 환어음이 일단 발행되면 그 지급은 강제성을 가지며, 화환신용장 환어음은 무조건 지급 규칙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신용장 지급은 불확정성을 가지며, 서류의 일치성에 달려있다. 서류와 신용장이 완전히 일치할 때, 은행의 조건부 지급승낙이 비로소 확정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지급승낙으로 변할 수 있다.¹¹⁾ 따라서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 중국은행이 이미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 중국은행의 신용장 상의 책임은 이미 어음상의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¹²⁾

한편 중국의 어음법 제41조는 “지급인은 그 인수를 제시한 환어음에 대하여 마땅히 인수를 제시한 환어음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일 내에 인수 혹은 인수를 거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화환신용장 환어음이 중국의 어음법 규정에 따른다면, 은행은 반드시 규정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된다면 신용장 하의 서류의 심사시간을 불충분하고도 또한 비현실적으로 만들게 된다.¹³⁾

10) 张天桥, “从实践中看UCP600对国际贸易的影响-浅评UCP600的变化”, 改革与战略, 2008. 4, p. 72.

11) 蓝翠玉·刘琳琳, 전계논문, p. 118.

12) 강원진·손성문, “중국에서의 신용장사기 구제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24권 제3호, 1999. 12, p. 283.

2. 중국의 신용장 규정과의 충돌

중국은 신용장과 관련된 입법이 없으며 단지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있을 뿐이다.¹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05년 11월 14일 UCP 500을 참조하여 ‘신용장 분쟁 사건 심리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하 ‘규정’이라 약칭함)을 공포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규정’은 중국 최초의 신용장과 관련한 법 규정이며 중국 신용장 입법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¹⁵⁾ 즉, 동 ‘규정’은 중국의 국제 상거래에서 신용장 결제방식의 사용을 위한 법률 근거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¹⁶⁾ 상술하면 동 ‘규정’은 중국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신용장 문제를 일부 전문적으로 규정한 법률문건이며, 신용장 분쟁사건의 법률적용문제, 신용장 분쟁사건 중 관련된 서류와 신용장 심사의 표준문제, 신용장 사기문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¹⁷⁾

동 ‘규정’은 18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일곱 가지 주요한 분야를 커버한다. ① UCP의 적용 및 준거법(제1조~제4조), ② 신용장 독립성의 원칙(제5조), ③ 서류의 심사와 불일치(제6조~제7조), ④ 사기 예외(제8조~제9조), ⑤ 사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제10조~제11조), ⑥ 지급 금지명령의 신청 또는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제12조~제15조), ⑦ 신용장 개설 신청과 관련하여 발행된 보증서(제16조~제17조).¹⁸⁾

그런데 동 ‘규정’은 UCP 600과 이하의 몇 가지 점에서 서로 상충된다.

1) 취소가능 신용장의 인정 여부

‘규정’은 제1조에서 UCP 500 하 전체의 신용장 거래 부분, 즉 신용장의 개설, 통지, 조건변경, 취소, 확인, 매입, 상환 등을 포함하여 발생한 분쟁은 모

13) 藍翠玉·刘琳琳, 전계논문, p. 118.

14) 馬靈霞, “UCP600與中國的立法及司法實踐”, 中國法律, 2007. 10, p. 36.

15) 姜钰, “我国信用证立法与惯例比较研究”, 商业时代, 2008年 第22期, p. 63.

16) 焦伟娅·杨利, “从UCP600审视我国信用证立法”, 现代商贸工业, 2008. 12, p. 263.

17) 裴小微, 전계논문, p. 68.

18) F. King-tak, “Chinese guidelines for L/C disputes”, *DCINSIGHT*, Vol.12, No.2, ICC, 2006. 4/6, p. 1.

두 그 조정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이것은 UCP 500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였다.¹⁹⁾ 그러나 UCP 500에서 취소불능 신용장을 원칙으로 규정한 이후 실무계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²⁰⁾ 그 이유는 취소가능 신용장은 수익자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취소가능 신용장의 제한된 사용을 감안하여 UCP 600은 취소가능 신용장을 제외하고 신용장은 개설 즉시 취소 불능함을 강조하였다.²¹⁾ 따라서 현행의 UCP 600 하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취소가능 신용장의 인정과 관련하여 중국의 ‘규정’과 현행의 UCP 600이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

2) 서류의 심사표준의 차이

‘규정’은 제6조²²⁾에서 인민법원이 신용장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중 취하는 서류의 심사표준은 ‘표면상 일치’와 ‘실질일치’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UCP 600이 채택하는 서류심사표준은 多重的이다. 즉, 운송서류, 상업송장과 보험서류에 대하여 채택하는 것은 ‘엄격일치’이지만, 그러나 기타의 서류에 대하여 채택하는 것은 ‘서류는 반드시 그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³⁾

이에 관하여 중국의 신용장 전문가인 金赛波 변호사는 최고인민법원이 사용한 엄격일치의 기준이 너무나 융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서류상에 표시된 불일치는 개설은행에 의한 어떠한 오해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제시된 이러한 두 서류들을 전체적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유사한 문제들에서 ICC 은행위원회가 취한 공식적 의견과 불일치할 것이며,²⁴⁾

19) 娄钰, “UCP600与我国信用证法律适用的若干问题”, 对外经贸实务, 2008. 2, p. 74.

20) 이방식·박석재,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0권, 2011. 5, p. 93.

21) 喻新星·武青青, “论UCP600的新发展及其对国际贸易实践的影响”, 法制与社会, 2009. 6, p. 115.

22) “人民法院在审理信用证纠纷案件中涉及单证审查的, 应当根据当事人约定适用的相关国际惯例或者其他规定进行: 当事人没有约定的, 应当按照国际商会《跟单信用证统一惯例》以及国际商会确定的相关标准, 认定单据与信用证条款, 单据与单据之间是否在表面上相符. 信用证项下单据与信用证条款之间, 单据与单据之间在表面上不完全一致, 但并不导致相互之间产生歧义的, 不应认定为不符点.”

23) 娄钰, 전계 주 15, p. 63.

불일치가 모호함을 야기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제표준은행관행²⁵⁾과 같은 일련의 객관적 기준보다 오히려 판사의 주관적 표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마도 객관적 표준을 주관적 표준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판결은 또한 복건 고등법원으로부터의 지시의 요청에 대한 회답으로서 이전에 공포한 그 의견에서 최고인민법원이 판정한 모든 서류들은 전체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그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⁶⁾

요컨대 서류의 심사표준은 UCP 600이 중국의 ‘규정’에 비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 실무 운용상 보다 편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²⁷⁾

3) 개설은행의 불일치 서류에 대한 처리방식의 차이

‘규정’ 제7조하에서 개설은행의 불일치 서류에 대한 처리는 두 종류의 방식이 있다. 즉, 첫째 방식은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고, 둘째 방식은 개설의뢰인에게 불일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연락하는 것이다.²⁸⁾ 그러나 UCP 600 제16조 c항은 은행이 지급 거절 전신 중 서류에 대한 처리의 옵션이 네 가지 즉, iii. a) 제시자의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 b) 개설의뢰

24) ICC 은행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을 나타내며 간행된 R635의 견해에서, 은행위원회는 신용장 번호의 긴 목록에서 실수로 잘못 입력하기 쉽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서류상에 신용장 번호의 삽입 요구조건은 그들이 길을 잃을 수 있는 서류들을 추적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그 서류들이 개설은행에 의하여 수령되었고 개설은행은 올바른 신용장 번호 하에 제시된 선하증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부적절하고 유효하지 않은 이유인 것처럼 보인다. 개설은행이 신용장 번호를 잘못 인용하였다는 사실이 그들이 강조하려고 하는 불일치의 의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ICC 은행위원회의 공식적 의견은 “그 선하증권 상에 그 신용장 번호의 잘못 인용이 거부의 이유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고 결정하였다.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s 2005-2008, Preface 및 R635 참조.

25) UCP 500 제정 당시 서류심사의 기준으로서 엄격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나온 것이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이라는 개념이다(박석재,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의 의의 및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2권, 2004. 2, p. 50.).

26) J. Saibo, *op. cit.*, p. 78.

27) 焦伟娅·杨利, 전계논문, p. 264.

28) 娄钰, 전계 주 19, p. 74.

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거나, 또는 권리포기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기 이전에 제시자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을 때까지, 개설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 c) 은행이 서류를 반환할 것, 또는 d) 은행이 사전에 제시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 중 개설은행은 지급거절 전신 중에 “바로 불일치에 대하여 개설의뢰인의 의견을 구하며, 일단 불일치를 포기한다면 개설은행은 장차 그에게 서류를 인도한다.”는 조항을 부가하며, 이러한 종류의 방법은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모두에 대하여 유리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중국의 ‘규정’과 서로 모순되는 것이며, 일단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종종 ‘규정’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지급거부 전신은 무효라고 생각할 수 있다.²⁹⁾

요컨대 UCP 600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 하에서 개설은행의 불일치 서류의 처리에 관한 중국의 ‘규정’은 UCP 500에 준거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정이며 비록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융통성이 결여되어 신용장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Ⅲ. 신용장의 운용 관련 문제

1. 관계 당사자들의 신용장 실무 지식 부족

중국의 많은 무역업자들과 은행업자들이 신용장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 지식이 부족하다. 이의 원인으로는 중국이 서방의 여러 국가들과 분리되어 그들만의 폐쇄적인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다가, 덩소핑이 집권한 1978년 이후의 개혁·개방 정책에 힘입어 비로소 세계와 경제 교류를 하기 시작한 점을 들 수 있다.³⁰⁾

즉, 오랜 기간 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젖어 있다가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한 중국으로서는 신용장 통일규칙이 매우 낯 설기 때문에 신용장제도가 정착

29) 姜钰, 전계 주 15, p. 64.

30) 강원진·손성문, 전계논문, p. 272.

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규칙을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³¹⁾

상술했다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많은 개인들이 국제무역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수출무역에 관한 불충분한 지식 또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잡한 결제방식인 신용장은 신용장의 제 조건에 따라서 일치하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많은 초보자들은 신용장의 제 조건 뒤에 숨어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이해는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신용장의 기본적인 요구조건조차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일은 쉽지 않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의 광둥성에서 많은 기업들은 신용장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³²⁾

또한 일부 기업들은 업무 담당자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서류 작성이 서투르고 서류 제출 전에 자세히 서류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³³⁾ 즉, 은행과 수출입상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UCP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응용의 존재가 중국 내 신용장의 운용 관련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³⁴⁾

이러한 요인들은 신용장의 매우 제한된 이용을 초래하여 왔으며, 또한 중국에서 UCP 600을 적용하는 데 커다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업자들의 무역실무 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중국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중소기업의 사장들은 그들의 종업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돈을 지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³⁵⁾

31) 남풍우, “대중국상품거래에서 무역결제상의 문제점-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창업정보학회지, 한국창업정보학회, 창간호, 1998. 3, p. 80.

32) W. Xuehui, “Why Do Chinese Suppliers ‘Dislike’ LCs?”, *Documentary Credit World*, Vol.17, No.5, 2013. 5, p. 38.

33) 李燕, “信用证项下如何审证和处理不符点的问题”, *对外经贸实务*, 2012. 1, p. 66.

34) 张天桥, *전계논문*, p. 70.

35) W. Xuehui, *op. cit.*, p. 40.

2. 지정은행의 소극적 역할

UCP 600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지정은행(nominated bank)은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은행을 의미하며, 어느 은행에서나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은행을 의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지정은행이란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신용장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을 의미한다. 개설은행은 특정은행을 지정은행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모든 은행을 지정은행이 되도록 할 수도 있다.³⁶⁾

대부분의 신용장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는 지정은행을 포함한다. 실무상은 수익자 등의 제시인 으로부터의 즉시 자금화의 요청에 따라 지정은행은 자행이 인수한 환어음 금액 또는 자행이 부담한 연지급 약속 금액에서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자금의 선지급을 하는 이른바 할인이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³⁷⁾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 은행들은 지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수출상의 서류들이 그들에게 제시될 때, 그들은 그 서류들을 심사하고 서류취급 수수료를 징수하지만, 그 서류들에 대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최종지급을 위하여 개설은행에게 그 서류들을 단지 발송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중국 은행들은 불일치와 관련된 논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³⁸⁾ 즉, 외국 은행들로부터의 장래의 상환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 은행들은 현금을 갈망하는 수출상에게 신용장에 기초한 금융의 제공을 꺼린다.³⁹⁾

중국의 현재의 실무 관행의 예를 들면 매입신용장에 대하여, 비록 상호 일치하는 제시서류를 구성하는 상황 하에서도 매입은행은 단지 개설은행 측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취득한 후 그 대금을 수익자에게 이체하며, 매입은행은 선 지급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 대금의 선 지급에 동의를 하지 않으며, 매입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시간은 분명히 UCP 600 규정보다 늦으며 그것을 ‘선

36) 대한상공회의소 편, UCP 600(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5, p. 25.

37) 이방식·박석재, “UCP 600의 실무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2권, 2009. 5, p. 100.

38) W. Xuehui, *op. cit.*, p. 39.

39) W. Shanlun, *op. cit.*, p. 7.

지급'이라고 칭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중국의 매입은행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은행은 서류를 심사하지 않으며, 교섭하지 않으며, 동시에 매입은행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비록 매입은행이 서류심사를 잘못 하더라도, 매입은행에 대하여 거의 어떠한 영향도 없다. 그래서 매입은행은 적극적으로 서류를 심사하고, 교섭하지 않는 것이다.⁴⁰⁾

중국 지정은행들의 이러한 소극적 자세는 또한 서류의 심사와도 관련이 있다. 신용장 하에서 서류의 심사는 복잡한 일이다. 은행들이 동일한 서류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만일 중국의 어느 은행이 그 지정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동 행은 서류들이 개설은행에 의하여 거절될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중국 은행들은 단지 전달하는 은행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은행들이 신용장을 취급함에 있어서 그들의 전문적인 능력에 관하여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⁴¹⁾

IV. 사법기관 관련 문제

1. 지급 금지명령의 남용

UCP 600 제4조 a항은 신용장의 커다란 특징 중 하나인 독립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용장 거래 시 매매계약이나 계약 내용에까지 영향을 받기에는 은행의 서류 심사 시 거래에 대한 전문성 문제, 처리 비용과 시간문제, 잠재적 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급 수단이라는 신용장 거래의 장점이 훼손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인식에 근거한다.⁴²⁾

신용장의 독립성의 예외로서는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엄격히 일치한

40) 杨育文, “议付信用证项下追索劬若干问题探讨”, 对外贸易实务, 2013. 1, p. 76.

41) W. Xuehui, *op. cit.*, p. 39.

42) 대한상공회의소 편, 전계서, p. 36.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기 또는 위조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당해 신용장의 대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일명 Fraud Rule이라고 한다. 이는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으며,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에 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⁴³⁾

중국 법 하에서는 영미법 하에서의 ‘지급 금지명령’(injunction)⁴⁴⁾과 유사한 어떠한 구제책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신용장의 독특한 성질을 감안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만일 사기가 입증되고 그 사기가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구제책 중의 하나로서 ‘지급 금지명령’(stop payment order)을 공식화해 온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damage)란 아마도 일단 지급이 행해진다면 신용장 대금의 회복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⁴⁵⁾

그런데 중국에서는 중국 법관들의 신용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신용장에 대한 지급 금지명령이 남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신용장 사기 사건을 취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법원들의 판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⁴⁶⁾

확실히 신용장 사기의 결정 및 법원이 중국의 법률 하에서 사법의 구제수단(judicial remedy) 부여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⁴⁷⁾ 예를 들면 제1심 법원인 Rizhao Intermediate Court는 지급 금지명령이 추구되는 경우, 법원은 사기가 신용장 거래에 존재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기에 대한 어떠한 예외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지급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산둥 고등법원은 신용장 사법의

43) 대한상공회의소 편, 전게서, p. 41.

44) injunction은 우리나라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분쟁의 발생 시 수출상의 사기를 이유로 수입상이 신용장에 의한 대금의 지급을 사전에 금지시키는 법적 수단이다(남풍우, 전게논문, p. 95.).

45) F. King-tak, *op. cit.*, p. 22.

46) 하현수,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중국의 사기에의 적용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 관세학회, 제9권 제1호, 2008. 2, p. 310.

47) J. Saibo, “Trade Financing Laws and Practices of China”, *2012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12, p. 93.

해석에 따르면, 청구가 제기되기 이전에 지급 금지명령이 추구되는 경우, 법원은 전술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하면서 지급금지 명령을 해제하였다.⁴⁸⁾

또 다른 예를 들자면 Dalian Intermediate Court는 2009년의 한 사건⁴⁹⁾에서 수익자인 Korean Seafood Co., Ltd.가 고의로 물품의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중국 민법통칙에서 규정된 선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신용장 사법의 해석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그것은 신용장 사기이다. 그러나 중국 공상은행(ICBC)은 어음 발행인에 대한 신뢰보다는 오히려 개설은행이 제공한 지급 확약에 기초한 신용장을 매입하였으며, ICBC는 제시된 서류들 뿐만 아니라 신용장의 진정성에 대해 책임이 없다. ICBC가 이 사건에서 그 사기에 참여하였거나 Korean Seafood Company가 저지른 사기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 ICBC가 행한 매입은 UCP 및 관련된 ICC 표준에 부합하였고, 선의의 매입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신용장 사법의 해석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비록 사기가 이 사건에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 금지명령은 부여되지 않아야 한다. 즉, 비록 사기가 발견되더라도 신용장이 매입되었고 매입은행이 선의가 아니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경우 어떠한 지급 금지명령도 허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⁵⁰⁾

최근에 다수의 중국 은행들이 개설한 신용장과 관련하여 수 천만 달러에 이르는 일련의 지급금지 명령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사기꾼들은 기한부 신용장 및 참고증명서와 관련된 허점을 이용하였다. 즉, 개설은행/인수는 행으로부터 제시된 서류들을 받자마자,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원래의 참고 증명서를 취소하고 다른 명칭의 새로운 참고 증명서의 발행을 위하여 그 참고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참고 증명서들이 다른 신용장 하에서 매입을 위한 요구서류로서 제시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상술한 신용장의 기 매입

48) Shandong Huaxin Industry & Trade Co., Ltd.(Applicant) v. Marica Jun Transport(Hong Kong) Co., Ltd.(Respondent)(19th November 2008), Shandong Pangu Energy Co., Ltd.(Applicant) v. ASN Resources Co., Ltd.(Respondent)(19th November 2008)(J. Saibo, supra note 3, p. 80.).

49) Dalian xx Food Co., Ltd.(Appellant) v. Korean xx Seafood Co., Ltd.(Appellee), China Agriculture Bank Co., Ltd., xx Branch(Original Third Party),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Limited, xx Branch(Original Third Party)(12th November 2009).

50) J. Saibo, supra note 3, p. 81.

및 매입은행이 선의가 아니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경우 지급 금지명령이 허가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건들에서 관련된 사기를 감안하여 지급 금지명령들이 반복적으로 수여되었다.⁵¹⁾

다른 사건들에서 2008년 말 매입은행은 매수인 그룹에 대하여 신용장 매입을 중단하였다. 실질적인 수입상의 파산 등 원인으로 인하여 관련된 수입 대리인들과 개설은행들은 수입상으로부터 상환을 획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입 대리인들 및/또는 개설은행들은 사기를 이유로 개설은행들이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중국의 법원들로부터 일련의 지급 금지명령들을 손쉽게 획득하였다.⁵²⁾

2. 법원 판결의 일관성 결여

중국의 법원들은 국제 신용장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중국의 국내 은행들이 개설한 신용장의 국제적인 평판이 신용장 분야에서 국제적인 ‘게임의 규칙’의 이해의 결여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장 분쟁 사건들의 재판에서 중국 국내법원들의 기준 및 분별의 부족 문제가 줄곧 지적되고 있다.⁵³⁾

개혁·개방의 초기 단계에서 중국의 인민법원에 의한 신용장에 관한 사건들의 재판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즉, 중국의 인민법원은 신용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사건들의 재판에서 종종 실수를 하고 있다. 신용장 분야에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중국의 인민법원의 판사들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⁵⁴⁾

신용장 사기에 따른 중국법원의 판례를 검토해 보면, 중국의 수입상이 선하증권의 사본 또는 화물선취보증서 등으로 중국에 도착한 화물을 인출한 것에 대하여 외국의 당사자가 중국 법원에 중국의 수입상이 행한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대상이나 적용 법률이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소송을 기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를 인정

51) F. King-tak, “Recent stop-payment order cases in China”, *DCInsight*, Vol.15, No.2, ICC, 2009. 4/6, p. 11.

52) F. King-tak, “Chinese courts and negotiation in good faith”, *DCInsight*, Vol.17, No.3, ICC, 2011. 7/9, p. 17.

53) J. Saibo, *supra* note 47, p. 93.

54) J. Saibo, *supra* note 47, p. 97.

한 예 등 법원판결의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⁵⁵⁾

V. 결 론

본고는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UCP 600 적용상의 문제점을 중국의 법·규정과의 충돌 문제, 신용장의 운용 관련 문제, 사법기관 관련 문제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중국은 과거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하지 않고 무역실무, 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계무대에서의 게임의 규칙을 잘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점차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법·규정이 이하와 같이 UCP 600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첫째, 중국의 어음법이 환어음의 要式性을 강제하고 있으나 실무상 회환신용장 하의 환어음은 요식성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 어음법 제8조에서는 어음 금액의 문자 및 숫자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자 및 숫자 금액이 불일치하더라도 환어음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문자금액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상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중국의 어음법에서는 환어음은 지급조건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되며 일단 발행되면 지급의 강제성을 갖는 반면, 신용장 지급은 불확정성을 가지며 서류의 일치성에 의존한다. 또한 중국의 어음법 제41조에 따르면 지급인은 환어음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일 내에 인수 혹은 인수거절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신용장 하의 서류심사기간인 제5 은행영업일보다 단축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용장 분쟁 사건 심리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은 UCP 500을 참조하여 제정된 관계로 현행의 UCP 600을 적용할 때 취소가능 신용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서류의 심사표준의 차이가 있다는 점, 개설은행의 불일치 서류에 대한 처리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55) 강원진·손성문, 전제논문, p. 293.

신용장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중국 관계 당사자들의 신용장 실무 지식이 부족하고, 지정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단지 서류 및 대금을 전달하는 소극적 역할을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관련해서는 중국 법관들의 신용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 금지명령이 남용되고 있으며, 법원판결의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손성문, “중국에서의 신용장사기 구제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한국 무역학회, 제24권 제3호, 1999. 12.
- 남풍우, “대중국상품거래에서 무역결제상의 문제점-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창업정보학회지, 한국창업정보학회, 창간호, 1998. 3.
- 대한상공회의소 편, UCP 600(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5.
- 박석재,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의 의의 및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2권, 2004. 2.
- 이방식·박석재,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 무역상무학회, 제50권, 2011. 5.
- _____, “UCP 600의 실무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 무역상무학회, 제42권, 2009. 5.
- 하현수,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중국의 사기에외 적용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9권 제1호, 2008. 2.
- 江波, “浅析信用证下汇票缮制的几个问题”, 商场现代化, 2008. 12.
- 裘小薇, “UCP600与我国信用证审单标准的若干法律问题研究”, 广西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2009. 9.
- 唐斌·杨荣·唐贵才, “信用证软条款的7种表现”, 对外贸易实务, 2010. 2.
- 藍翠玉·刘琳琳, “跟单信用证汇票适用我国<票据法>的疑难问题及对策”, 山东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2012年 第2期.
- 娄钰, “我国信用证立法与惯例比较研究”, 商业时代, 2008年 第22期.
- 娄钰, “UCP600与我国信用证法律适用的若干问题”, 对外经贸实务, 2008. 2.
- _____, “UCP600與中國的立法及司法實踐”, 中國法律, 2007. 10.
- 谢岗平·郭轶芳, “UCP600对我国进出口商的影响”, 时代经贸, 2008. 6.
- 杨育文, “议付信用证项下追索权若干问题探讨”, 对外贸易实务, 2013. 1.
- 喻新星·武青青, “论UCP600的新发展及其对国际贸易实践的影响”, 法制与社会, 2009. 6.
- 李燕, “信用证项下如何审证和处理不符点的问题”, 对外经贸实务, 2012. 1.

- 李向东, “国际结算方式的选择与风险防范”, 江苏技术师范学院学报, 2006. 2.
- 张天桥, “从实践中看UCP600对国际贸易的影响-浅评UCP600的变化”, 改革与战略, 2008. 4.
- 郑丽梅·张洁, “危机下企业贸易结算方式的选择”, 中国商贸, 2011. 4.
- 焦伟娅·杨利, “从UCP600审视我国信用证立法”, 现代商贸工业, 2008. 12.
- 黄芝伟·唐兴红, “UCP600对软条款信用证的影响”, 湖北经济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08. 11.
- King-tak, F., “Chinese courts and negotiation in good faith”, *DCInsight*, Vol.17, No.3, ICC, 2011. 7/9.
- _____, “Recent stop-payment order cases in China”, *DCInsight*, Vol.15, No.2, ICC, 2009. 4/6.
- _____, “Chinese guidelines for L/C disputes”, *DCINSIGHT*, Vol.12, No.2, ICC, 2006. 4/6.
- Laprès, D. A., & Mo, J., “L/Cs, collections, guarantees and other instruments in the PRC”, *DCINSIGHT*, Vol.13, No.4, ICC, 2007. 10/12.
- Saibo, J., “Review on the Cases of Letter of Credit in China, 2008 to 2010”, *2012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12.
- _____, “Trade Financing Laws and Practices of China”, *2012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12.
- Shanlun, W., “How L/Cs are faring in the economic turmoil: a view from four countries”, *DCInsight*, Vol.15, No.2, ICC, 2009. 4/6.
- Xuehui, W., “Why Do Chinese Suppliers ‘Dislike’ LCs?”, *Documentary Credit World*, Vol.17, No.5, 2013. 5.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UCP 600 in the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with China

Park, Suk Jae

This paper intends to study som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UCP 600 in the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with China. Generally speaking, China complies with UCP 600 well. Nevertheless,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UCP 600 in China owing to the difference in law and practices.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UCP 600 in China owing to the difference of practices under Bills of Exchange Act and The Prov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ome Issues Concerning the Trial of Cases of Disputes over Letter of Credit. The Act insists on the formal requirements, the consistency between a letter amount and a figure amount, the unconditional payment character of bills of exchange. The Provisions include the recognition of revocable credits, the difference of standard in examining documents, the difference in the treatment of issuing banks in relation to discrepant documents. These aforesaid matters of the Act and the Provisions are inconsistent with the practices under the UCP 600.

There are two main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letters of credit in China. One is the lack of concerned parties' practice knowledge in relation to letters of credit in China. The other is the inactive stance of nominated banks in China.

There are two main problems in relation to judiciary institutions in China. First, judges in China tend to abuse the injunctions owing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relation to letters of credit. Secondly, there are inconsistency in the court ruling in China.

Key Words : UCP 600, Letter of Credit, L/C, China